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대 훈

2023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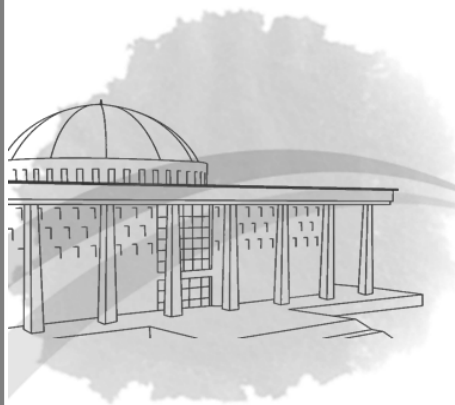
구 분	입법조사관	연락처
국가교육위원회	창성현	6788-5184

목 차

I . 결산 개요	1
1. 총 괄	3
2. 일반회계	5
가. 세입결산	5
나. 세출결산	5
1) 총 괄	5
2) 인건비	6
3) 기본경비(총액대상)	7
4) 기본경비(총액비대상)	8
5) 주요사업비	9
6) 이체 · 이용 · 전용	10
7) 이월 및 불용	11
3. 2023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재무제표 분석	13
가. 재정상태 분석(재정상태표)	13
나. 재정운영 분석(재정운영표)	14
다. 순자산변동 분석(순자산변동표)	15
II . 검토의견	17
1. 세출	19
가. 국가교육위원회	21
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21
(1) 법령 기준에 따른 고용부담금 산정을 비롯한 비목별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해 기본경비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	27

(2) 예산 전용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필요	31
2)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35
: 정책연구 계약의 적시 발주를 통해 정책연구비의 이월 및 불용을 해소할 필요	37

1. 결 산 개 요



1. 총 괄

□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1개 회계로 구성됨.

□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0원임.

< 2023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총계	0	-	-	-	-	-
예산	0	-	-	-	-	-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액 98억 9,100만원의 76.2%인 75억 3,300만원으로, 11억 4,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12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출예산액 (A)	예산현액	결산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총계	9,891	9,919	7,533	1,140	1,245	76.2
예산	9,891	9,919	7,533	1,140	1,245	76.2
(총지출)	(9,891)	(9,919)	(7,533)	(1,140)	(1,245)	(76.2)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0원임.

나. 세출결산

1) 총 괄

□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8억 9,100만원임. 예산현액은 99억 1,900만원으로 이 중 75.9%인 75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4,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4,5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2023년도	9,891	9,919	7,533	1,140	1,245
2022년도	1,455	1,455	1,220	28	207
증감률	579.8	581.7	517.5	3,971.4	501.4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액 75억 3,300만원을 주요 내역별로 살펴보

면, 인건비 24억 3,500만원, 기본경비 18억 200만원, 주요사업비 32억 9,600만원임.

<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이용 이체액				
계	9,891	28	-	-	-	9,919	7,533	1,140	1,245
인건비	2,953	0	-	-	-	2,953	2,435	0	518
기본경비 (총액대상)	859	0	-	△261	-	598	369	41	188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476	4	-	261	-	1,741	1,433	229	79
주요 사업비	4,603	24	-	-	-	4,627	3,296	871	46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 인건비

- 2023회계연도 인건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29억 5,300만원으로, 이 중 82.5%인 24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1,800만원은 불용 처리함.

< 2023년도 인건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감(△)액	이용 이체액				
합계	2,953	0	0	0	0	2,953	2,435	0	518
인건비(110)	2,953	0	0	0	0	2,953	2,435	0	518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3) 기본경비(총액대상)

-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총액대상)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8억 5,900만원에 전용으로 2억 6,100만원 감액된 5억 9,800만원으로, 이중 61.7%인 3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을 이월하여 1억 8,8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2023년도 기본경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이용 이체액				
합계	859	0	0	△261	0	598	369	41	188
인건비(110)	257	0	0	0	0	257	199	41	17
운영비(210)	143	0	0	0	0	143	56	0	86
직무수행경비(250)	81	0	0	0	0	81	78	0	4
민간이전(320)	378	0	0	△261	0	117	36	0	81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기본경비(총액대상) 이월액 4,100만원은 인건비에서 발생하였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본경비 총액의 15% 이내에서 이월한 것임.
- 기본경비(총액대상) 불용액 1억 8,800만원은 운영비, 민간이전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집행 잔액임.

4)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4억 7,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00만원, 전용액 2억 6,100만원을 포함한 17억 4,100만원으로, 이 중 82.3%인 14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900만원을 이월하여 7,9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2023년도 기본경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이용 이체액				
합계	1,476	4	0	261	0	1,741	1,433	229	79
운영비(210)	661	4	0	216	0	881	737	89	55
여비(220)	53	0	0	0	0	53	28	25	0
업무추진비(240)	47	0	0	0	0	47	43	4	0
연구용역비(260)	700	0	0	△318	0	382	247	111	24
유형자산(430)	15	0	0	363	0	378	378	0	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이월액 2억 2,900만원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연구비에서 발생하였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본경비 총액의 15% 이내에서 이월한 것임.
- 기본경비(총액비대상) 불용액 7,900만원은 운영비, 일반연구비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집행 잔액임.

5) 주요사업비

- 주요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1개 사업임. 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46억 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400만원을 포함한
46억 2,700만원으로, 이 중 71.2%인 32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7,100
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0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다음연도 이월액 8억 7,100만원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 3억
원, 연구용역비 5억 7,100만원으로, 이는 연구센터용역 및 정책연구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임.
- 불용액 4억 6,000만원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 3억 7,100만
원, 여비 5,600만원, 연구용역비 3,300만원임.

< 2023년도 주요사업비(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 산 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이용 이체액				
합계	4,603	24	0	0	0	4,627	3,296	871	460
운영비(210)	3,458	10	0	0	0	3,468	2,797	300	371
여비(220)	101	0	0	0	0	101	45	0	56
업무추진비(240)	44	0	0	0	0	44	44	0	0
연구용역비(260)	1,000	14	0	0	0	1,014	410	571	33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6) 이체 · 이용 · 전용

- 국가교육위원회가 '22.9.27. 출범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년 예산은 교육부에서 편성한 본예산 98억 9,100만원을 이체받은 것임.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동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A-B)	증감률(%)
이 체	9,891	259	9,632	3,718.9
이 용	0	0	-	-
전 용	579	0	579	순증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2023년 전용은 사무실 이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고용부담금 2억 6,100만원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자산취득비 2억 1,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500만원으로 전용하였고, 상용SW 구매를 위해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일반연구비 3억 1,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총 5억 7,900만원을 전용하였음.

7) 이월 및 불용

-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11억 4,000만원의 이월과 12억 4,5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 및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A-B)	증감률(%)
사고이월	1,140	28	1,112	3,971.4
불 용	1,245	207	1,038	501.4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이월의 주요 사유는 연구센터용역 및 정책연구용역의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 주요 이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일반회계 주요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 사유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4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기본경비 이월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229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기본경비 이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871	연구센터용역(300백만원) 및 정책연구용역(571백만원)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계	1,14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불용의 주요 사유는 정원의 순차적 충원과 교육부 기준으로 편성된 인건비 직급별 평균단가와 실제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직급별 평균단가 차이로 인한 인건비 불용으로, 주요 불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일반회계 주요 불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불용액	불용 사유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518	인건비 집행잔액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188	운영비, 민간이전 집행잔액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9	운영비 등 집행잔액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60	운영비 등 집행잔액
계	1,245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3. 2023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재무제표 분석

가. 재정상태 분석(재정상태표)

- 국가교육위원회는 '22.9.27. 출범하여 '23 회계연도 자산은 전기 대비 15억 9,500만원이 증가한 19억 6,900만원으로, 부채는 0원임.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9억 6,900만원임.

< 2023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 산	1,969	374	1,595	426.5
부 채	-	-	-	-
순 자 산	1,969	374	1,595	426.5

- 자산은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운영사업 등 선급금이 집계됨에 따라 유동자산 12억 8,700만원이 순증하였고, 구축물·기계장치·집기·비품·차량 운반구 등 감가상각으로 일반유형자산이 전기 대비 1,400만원 감소하였으나, 외부구입소프트웨어 등 신규취득으로 무형자산이 322백만원 증가하였음.
- 2023회계연도 말 국가교육위원회의 부채는 0원임.

나. 재정운영 분석(재정운영표)

-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년도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54억 6,300만원 증가한 63억 8,100만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도 동일함.
- 2023년도 재정사업 운영에 따른 직접비용인 프로그램 순원가는 63억 8,100만원이며, 2023년도 관리운영비 등은 없음.
-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은 없음.

< 2023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 (C=A-B)	비율(C/B)
I. 프로그램순원가	6,381	918	5,463	595.1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	-	-	-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381	918	5,463	595.1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381	918	5,463	595.1

다. 순자산변동 분석(순자산변동표)

-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년도 기말 순자산은 전기대비 15억 9,500만원 증가한 19억 6,900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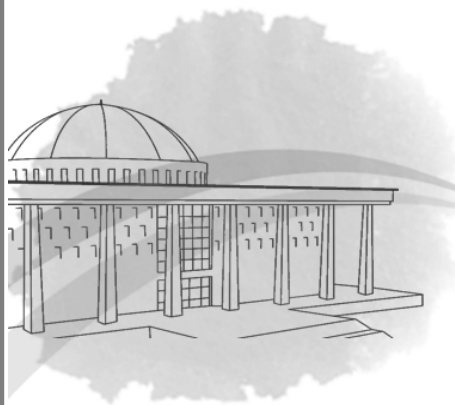
< 2023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순자산변동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374	-	374	-
II. 재정운영결과	6,381	918	5,463	595.1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977	1,292	6,685	517.4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969	374	1,595	426.5

- 재정운영결과 및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 대비 각각 54억 6,300만원 및 66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의 세부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이 75억 3,300만원으로 전기대비 63억 1,300만원 증가하였으며, 무상이전수입 2,900만원 감소 및 기타재원조달 4억 100만원 증가함에 따라 총 66억 8,500만원 증가함.
- 조정항목의 증감은 없음.

II. 검토 의견



1. 세 출

가. 국가교육위원회

<일반회계>

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7019-200)는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중 정원 및 인력 운영과 관련된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상용임금,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등)²⁾를 지원하는 사업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총액인건비 적용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예산 관련 업무에 있어서 위원장이 ‘중앙관서의 장’의 지위에 있으며³⁾,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편성 기준에 준하여 소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1) 문의: 02-6788-5184

2)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

구 분		세 부 내 역
인건비	공 통	인건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100~149)으로 편성된 보수(110-01목), 기타직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
운영 경비	중앙행정 기 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210-06목), 복리 후생비(210-12목), 기타운영비(210-16목), 교수보직경비(250-01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 고용부담금(320-09)
	책임운영 기 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물건비(200목) 중에서 시험연구비(210-13목), 일반 용역비(210-14목), 관리용역비(210-15목), 연구개발비(260목)를 제외한 전비목

자료: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2.5. p.19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현액은 5억 9,800만원으로, 3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8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61.7%임.

< 2023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859	△261	598	369	-	188	61.7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일반현황 및 소관 사무】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을 근거로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2.9.27 출범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소관 업무와 인사·예산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됨⁴⁾.

4) 국가교육위원회법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

-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1명과 상임위원(차관급) 2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회와 더불어 전문위원회(2개), 특별위원회(6개) 및 국민참여위원회를 두었으며,

<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체제 >

구분	기능	구성	임기
전체위원회	소관 사무의 최종 심의·의결	위원장 포함 21명	3년(1회 연임 가능)
전문위원회	소관 사무의 실무적 자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	소관사무별 위원장(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포함 21명 이내 (교육과정은 45명 이내)	2년(1회 연임 가능)
특별위원회	긴급·중요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사전검토 및 자문 등	위원장(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포함 21명 이내	1년(필요시 연장 가능)
국민참여위원회	소관 사무 추진 시,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련 자문 수행	위원장(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포함 500명 이내	2년(1회 연임 가능)

* 전문위원회(2개):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21인),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45인)

* 특별위원회(6개): 대 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특위(18인),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위(20인),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위(21인), 대학경쟁력 강화 특위(19인), 디지털 AI교육 특위(17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위(17인)

* 국민참여위원회: 현재 총 499명(공개모집 75% + 시도지사/교육감 추천 25%) 규모로 구성('23.5.12.)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20조(사무처) ④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위원회 사무처는 1처 3과(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정원 36명(전문임기제 2명 포함)의 규모로, 정무직 3명(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포함한 일반직 22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직급별 정원 및 현원 >

('24.7.31.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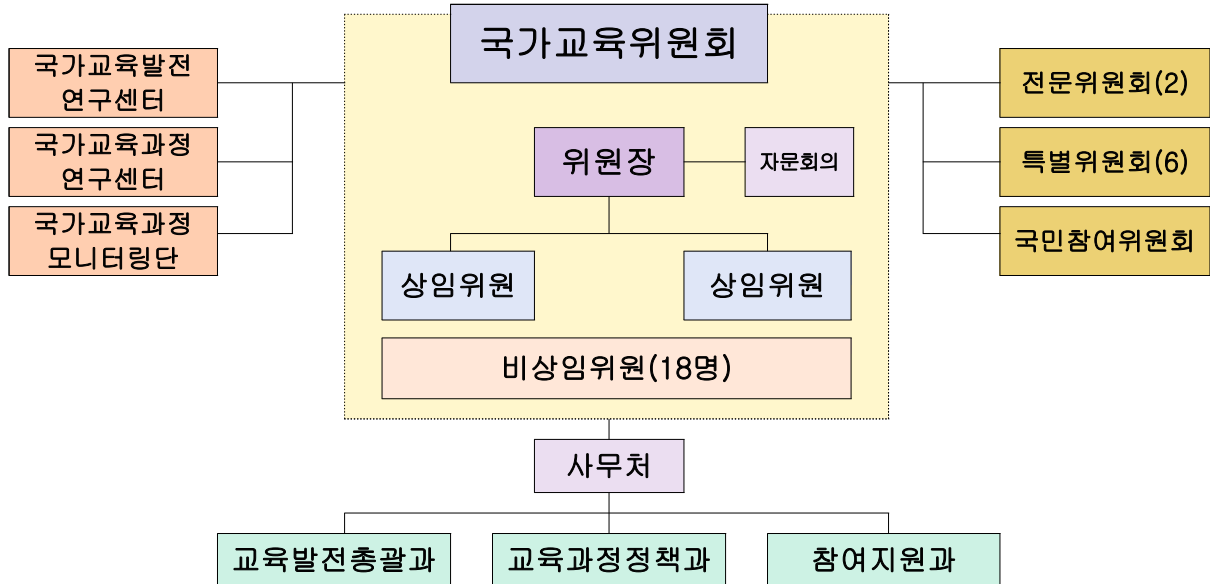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고공단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장학관	연구관	연구사
정원	36	3	1	2	2	10	7	1	2	8
현원	35	3	1	2	2	9	7	1	2	8

* 전문임기제 나급 2명 포함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개의 교육연구센터(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교육과정의 기준·내용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사·분석·점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 단’이 200명(학생 21명, 학부모 30명, 교원 119명, 전문가 3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조직 체계도 >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⁵⁾에 따라 ①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② 국가교육과정의 기준·내용 고시, ③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 중 “국가교육과정의 기준·내용 고시”는 교육부에서 이관된 업무이고, 나머지는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신설·보강된 기능임.

□ ①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계획 기간을 법정 수립기한(시행 전년도 3월

5)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말)6)과 시안 마련 및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 ~2035 계획’으로 설정하고 관련 논의 및 조사·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까지 시안을 마련할 계획임.

- ② 또한 국가교육과정의 기준·내용 고시를 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므로7) '24.5.1.에 ‘2023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결과 보고서’를 게시한 바 있으며,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두어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③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기능으로는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을 운영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에 교육과정·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8)

6)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7)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나) 검토의견

(1) 법령 기준에 따른 고용부담금 산정을 비롯한 비목별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해 기본경비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는 상용임금, 일용임금, 특근매식비, 고용부담금과 같이 정원 및 인력운영과 관련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인데,

2023년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43%,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1.7%에 불과하여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 2023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859	859	-	△261	-	598	369	41	188
예산액대비 집행률 (C/A)		현액대비 집행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43.0		61.7		6.9		31.4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할 때에는 요청받은 날(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 이처럼 집행이 부진한 것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고용부담금의 영향이 큼. 고용부담금(320-09)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정원 외 직원인 상용직의 4대보험료 및 퇴직연금 총당금,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전체 기본경비(총액대상)의 44%를 차지하는 3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고용부담금의 예산안 편성은 「국민연금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산정방식(기준보수총액×기준요율)에 따라 산출한 것이 아니며, 단가를 임의로 책정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3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3년 고용부담금 예산 산출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A)	산출내역
공무직	4대보험료	144,000	2,000천원*6명*12월
	퇴직연금	216,000	3,000천원*1명*12월
변호사	4대보험료	18,000	1,500천원*1명*12월
임기제	고용보험료	-	-
계		378,00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2023년 고용부담금 적정규모 재산출 내역 >

(단위: 천원)

내용	산출방식	구분	소요 예산	비고(적용기준)
4대보험료	보수총액의 11.25%	공무직	22,311	• 4대보험료율(11.25%):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4.0041%(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1.75%, 산재보험 1.0% • 퇴직연금: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급여 • 보수총액('23예산안) - 임기제(기타직보수, 110-02): 70,559 천원 - 공무직(상용임금, 110-03): 198,317천원 - 변호사(상용임금, 110-03): 41,314천원 - 일용직(일용임금, 110-04): 17,399천원
		변호사	4,648	
		일용직	1,957	
퇴직연금	보수총액의 1/12	공무직	16,526	
		변호사	3,443	
고용보험료 (임의가입)	보수총액의 0.9%*	임기제 공무원	635	
계			49,520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어 고용부담금 중 실업급여만 부담하면 되므로 0.9%의 요율이 적용됨.

□ 개별 법령에 따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올바르게 산출한 고용부담금의 적정 규모는 약 4,950만원으로, 이는 2023년 고용부담금 예산액의 13.1%에 불과한 수준임. 이를 토대로 판단할 때 2023년에는 약 3억 2,850만원(=378,000천원-49,500천원)이 초과편성 되었음.

□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규모의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고용부담금 중 2억 6,1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와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집행하였으나, 집행액은 3,600만원에 그쳐 8,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전체 기본경비(총액 대상) 불용액의 43.1%에 해당하는 수준임.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비목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비목별 비율)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200)	859	△261	598	369	41	188(100%)
- 상용임금 (110-03)	240	0	240	199	41	0(0%)
- 일용임금 (110-04)	17	0	17	0	0	17(9%)
- 특근매식비 (210-05)	51	0	51	6	0	45(23.9%)
- 복리후생비 (210-12)	61	0	61	24	0	37(19.7%)
- 기타운영비 (210-16)	30	0	30	26	0	4(2.1%)
- 직책수행경비 (250-02)	81	0	81	78	0	4(2.1%)
- 특정업무경비 (250-03)	-	-	-	-	-	-
- 고용부담금 (320-09)	378	△261	117	36	0	81(43.1%)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이처럼 고용부담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 외에도, 일용임금 1,700만원 전액 불용, 특근매식비 5,100만원 중 4,500만원 불용, 복리후생비 6,100만원 중 3,700만원 불용 등 기본경비의 여러 항목에서 불용률이 높았는데, 이 역시 적정 규모보다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됨.
-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비목에 대해서도 2023년도 불용액 등을 살펴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경비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예산 전용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필요

□ 예산의 전용(轉用)은 예산이 정한 각 세항(단위사업)·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이며, 전용 시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① 전용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이 불가능함.

또한 ② 전용의 절차와 관련하여, 자체전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⁹⁾,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것¹⁰⁾과 동시에,

9)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10)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¹¹⁾.

□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2023년에 두 차례 전용하였는데,

’23.5.11에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하여 고용부담금 중 2억 6,1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1,600만원,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 전용하였으며,

’23.11.10에 국가교육위원회 상용 SW 구매를 이유로 하여 일반연구비 중 3억 1,832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음.

< 2023년 국가교육위원회 전용 내역 >

(단위: 천원)

일자	요구건명	세부사업 (주는사업)	세목	배정액	세부사업 (받는사업)	세목	배정액
5.11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요청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실 이전)	국가교육 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고용부담금	△261,000	국가교육 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시설장비 유지비	216,000
						자산취득비	45,000

11)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자	요구건명	세부사업 (주는사업)	세목	배정액	세부사업 (받는사업)	세목	배정액
11.10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요청 (국가교육위원회 상용 SW 구매)	국가교육 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일반연구비	△318,323	국가교육 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자산취득비	318,323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먼저 전용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용 전후의 사업 간에 유사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23.5.11.의 전용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이었으며, '23.11.10.의 전용은 전용 전후의 지출 모두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어서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문제 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전용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각각 '23.5.11과 '23.11.10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용 승인을 받았고, 전용명세서를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였음.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장은 전용 내역을 각각 해당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 '23.7.31과 '24.1.31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4.4.2에 이르러서야 전용 내역을 제출한 바, 「국가재정법」상 규정된 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예산 전용 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등 절차를 지키는 것과 함께, 적시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용 내역을 제출하는 등 「국가재정법」상 규정된 전용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¹²⁾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주요업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국민의견수렴 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12) 문의: 02-6788-5184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현액은 46억 2,700만원으로, 32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8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0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71.2%임.

< 2023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603	24	-	4,627	3,296	871	460	71.2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나) 검토의견 : 정책연구 계약의 적시 발주를 통해 정책연구비의 이
월 및 불용을 해소할 필요

- 정책연구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관련
주요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이며, 2023년 정책연구비 예산현액은 10억 1,400만원으로 국가교육위
원회 운영지원 사업 예산현액 46억 2,700만원 중 21.9%를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국가교육위원회는 17개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
며 계약금액의 합계는 9억 6,545만원으로 예산현액과 큰 차이가 없
으나,

< 2023년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 현황 >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계약금액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 요청 관련 업무 수행 절차 연구	15,000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과정 개발 체제 연구	70,000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 및 효율화 방안 연구	50,000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 연구	50,000
세계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 용역	45,000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50,000
미래사회 대비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	70,000
중장기 국가교육과정 정책방향 탐색 연구	90,000
국가교육위원회 조직 발전방안 연구	36,364

연구과제명	계약금액
미래교육을 위한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방안 연구	84,000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 연구	147,000
직업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	43,632
지방대학 발전방안 연구	49,000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	50,000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탐색에 관한 연구	50,000
미래과학기술인재 양성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45,455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체계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20,000
합 계	965,45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구체적인 정책연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5억 7,100만원 가량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3,300만원을 불용하여 실제 집행액은 4억 1,000만원으로 집행률은 40.4%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23년 정책연구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지원(316)	4,603	24	0	4,627	3,296	871	460	71.2
－ 정책연구비 (260-02)	1,000	14	0	1,014	410	571	33	40.4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이처럼 정책연구비의 집행이 부진한 원인은 연말에 이르러서야 정책연구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인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관련 업무 수행 절차 연구’만 상반기에 추진되었을 뿐, 16개 연구과제는 ’23.10. 이후에 추진되었음.

< 2023년 정책연구 계약 계약기간 >

계약명	계약기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관련 업무 수행 절차 연구	‘23.2.~’23.4.(완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 연구	‘23.10.~’24.6.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	‘23.10.~’24.7.(계약 연장)
미래과학기술인재 양성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23.10.~’24.4.(완료)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연구	‘23.10.~’24.6.(계약 연장)
직업평생교육 발전 방안 연구	‘23.11.~’24.6.(완료)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 및 효율화 방안 연구	‘23.11.~’24.4.(완료)
지방대학 발전 방안 연구	‘23.11.~’24.5.(완료)
미래사회 대비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	‘23.12.~’24.7.(계약 연장)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23.12.~’24.7.(계약 연장)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	‘23.12.~’24.6.
미래 교육을 위한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방안 연구	‘23.12.~’24.7.(계약 연장)
국가교육위원회 조직 발전 방안 연구 용역	‘23.12.~’24.4.(완료)
중장기 국가교육과정 정책 방향 탐색 연구	‘23.12.~’24.8.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과정 개발 체제 연구	‘23.12.~’24.8.(계약 연장)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연구	‘23.12.~’24.6.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23.12.~’24.4.(완료)

※ ’24.7.3. 기준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이에 따라 17개 연구과제 중 10개 연구과제는 11월 이후에 계약 선금 등을 지출하였으며, 6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비의 집행 실적이 없어 11월 이후에 집행한 금액이 전체 정책연구비 집행액의 96.2%에 달함.

< 2023년 정책연구비 세부 집행 내역 >

(단위: 원)

자금이체 일자	지출결의 금액	건명
2023-04-18	15,000,000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관련 업무 수행 절차 연구 대금 지급
2023-11-13	31,818,170	미래과학기술인재 양성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용역 선금 지급
2023-11-14	30,000	조달수수료 지급
2023-11-14	35,000,000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연구 용역 선 금 지급
2023-11-15	35,000,000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 용역 계약 선금 지급
2023-11-24	35,000,000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책보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계약 선금 지급
2023-11-29	34,300,000	지방대학 발전 방안 연구용역 계약 선금 지출
2023-11-29	102,900,000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 연구' 용역 선금 지급
2023-12-08	1,427,200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 연구 계약 조달 수수료 지급
2023-12-13	20,000	직업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 입찰 계약 조달 수수료 지급
2023-12-14	49,000,000	미래사회 대비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계약
2023-12-15	25,000,000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용역 계약
2023-12-15	31,500,000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 용역 계약
합계	395,995,370	

※ 2022년 정책연구비 중 이월액 집행분은 제외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이에 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
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2023년 5월에 완료되었고, 각
위원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겨야 할 의제 발굴에 시간
이 소요됨에 따라 정책연구과제 선정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 중 ‘국가교육위원회 조직 발전방안 연구’는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와는 관련성이 없고¹³⁾,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과정 개발 체제 연구’ 등 일부 연구과제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¹⁴⁾에 규정된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정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과제로,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구성과는 관계없이 상반기에도 추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추후 정책연구계약을 추진하면서 연례적이거나 법정 업무와 관련하여 추진이 확실시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계약을 발주하고,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로부터 의제 발굴을 서두르는 등 조치를 통해 연례적인 정책연구비의 이월이나 불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13) 전문위원회(2개):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6개):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특위,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위,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위, 대학경쟁력 강화 특위, 디지털 AI교육 특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위

14)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